

취학원조제도 안내(2026년도)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요코하마시에서는 자녀를 요코하마시립 초, 중, 의무교육학교에 통학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을 원조하여 자녀의 취학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원조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 설명을 읽으신 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 원조 대상자

| 해 당 이 유 | |
|----------------------------------|--|
| ①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 | (수학여행 실시 학년 또는 교육부조 미수급자에 한함) |
| ② 2025년 4월 이후에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분 | (세대 변경으로 인한 폐지는 제외합니다.) |
| ③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계신 분 | (아동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과는 다릅니다. 또한 지급 개시가 연도 도중인 경우 인정 기간이 바뀝니다.) |
| ④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소득 기준 이하인 분. 소득 심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원조 항목 및 지급 예정액(연액)

※아래 금액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항 목 | 입 학 준비비 * 1 | 학용품 비 등 * 2 | 숙박을 수반하는 교외활동비 * 3 | 수학여행비 | 클럽활동비 * 4 | 졸업 앨범비 등 | 학교급식비 * 5 | 학교병 의료비 * 6 | 일본스포츠팀 센터 보호자 부담금 |
|---------|-------------|---|---------------------------|----------------------|---|----------|-----------|---------------------------|--|
| 초 등 학 교 | 1 학년 | 91,600 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16,680 엔 (1기 5,560 엔) | 보조대상 실비 (3,690 엔 한도) | 보조대상 실비 ※ 6년간 1회에 한함 | - | 현물 급부 | 실비 ※신청에 따라 각 학교에서 치료권을 발행 | 원칙적으로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부금을 면제 |
| | 2~5학년 | - | 18,950 엔 (1기 6,316 엔) | | | | | | |
| | 6 학년 | 101,000 엔 (구입권 지급분을 포함) | | | | | | | |
| | 교육부조수급자 | - | - | | | | | | |
| 중 학 교 | 1 학년 | 101,000 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34,850 엔 (1기 11,616 엔) | 보조대상 실비 (6,210 엔 한도) | 보조대상 실비 ※ 3년간 1회에 한함 (국외인 경우 60,910 엔 한도) | - | 현물 급부 | | |
| | 2 학년 | - | 37,120 엔 (1기 12,373 엔) | | | | | | |
| | 3 학년 | - | - | | | | | | |
| | 교육부조수급자 | - | - | | | | | | |

- * 1 '입학준비비'는 4월로 거슬러올라가 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의 '입학준비비'를 수급한 분 및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입학준비비'를 수급한 분께는 입학준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비 신청이 인정된 분 중 입학준비비 이외의 항목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번 취학원조를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단,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2 '학용품비 등'에는 숙박을 수반하지 않는 교외활동비, 통학용품비(입학준비비 수급자 제외), PTA 회비, 학생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년 도중에 시외로부터 전입하는 등, 수급 자격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는 감액 지급됩니다.
- * 3 '숙박을 수반하는 교외활동비'는 교통비, 견학료 중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한도액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 * 4 초등학교의 '클럽활동비'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재료비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 * 5 '학교급식비'는 급식 정지 기간(여름방학, 급식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학교급식비'는 2026년도는 실질적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중학교의 '학교급식비'는 취학원조 인정을 받은 후 무상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중학교 급식비에 대하여'를 확인하십시오.
- * 6 '학교병 의료비'에서 말하는 학교병(트라코마, 결막염, 백선, 개선, 농가진, 중이염, 만성 부비강염, 아데노이드, 충치, 기생충병)을 치료하려면 각 학교에서 발급하는 치료권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학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취학원조비를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중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학교에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올바른 계좌로 다시 입금할 때 취소, 정정, 재입금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교납입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원조비를 총당할(미납분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취학원조를 희망하는 분은 '10 신청서 기입에 및 기입 시 주의할 점'을 참고하여 '2025년도 취학원조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 | 담당: 각 학교의 학교 사무직원 |
|-------|---------------|-------------------|-----------------------------|
| 접수기간 | 당초 신청 | 4월 |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추가 신청 | 7월부터 다음 해 2월24일까지 | |

-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분은 자녀 한 명당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 * 계속해서 원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년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④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소득 기준

2025 년분의 세대 전체 소득이 다음 소득 기준액 이하인 분. 단, 세대 상황 등의 요건에 따라 소득으로부터 공제가 있습니다.

(세대에 대해서는 5 페이지의 '10 신청서 기입예 및 기입 시 주의할 점' *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세대원수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 소득 기준액 | 256만 엔 | 312만 엔 | 349만 엔 | 403만 엔 | 444만 엔 | 502만 엔 | 549만 엔 | 599만 엔 | 629만 엔 |

- 소득이란, 총소득 금액에서 분리 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급여소득자인 분은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란, 사업소득자인 분은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 등의 합계'란의 금액을 가리킵니다.
- 세대 전체의 소득이 기준 내인지 불확실한 경우는 일단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소득 공제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분 또는 세대는 소득으로부터 공제된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 요건 | | 공제액 |
|----|---|--|
| A | 급여소득, 공적연금 등의 소득 중 하나 또는 둘 다 있는 분 | 한 명당 소득액으로부터 최대 10 만 엔 (소득이 10 만 엔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 |
| B | 한부모 세대 또는 부모 이외의 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 세대의 소득액으로부터 35 만 엔 |
| C | 소득자가 복수 존재하는 세대 | 주 소득자 이외의 소득자 한 명당 최대 35 만 엔 (소득이 35 만 엔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 |
| D | 개별지원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이 있는 세대 | 대상자 한 명당 35 만 엔 |
| E | 장애자(장애자수첩, 요육수첩(사랑의 수첩) 등을 소지하신 분)이 있는 세대 | 대상자 한 명당 35 만 엔(D의 해당자 제외) |
| F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세대 | 세대의 소득액으로부터 의료비 공제액분 |

【예】 부(급여소득: 300 만 엔), 모(급여소득: 170 만 엔), 조모(소득: 0 엔), 형(개별지원학교 재적), 본인으로 구성된 5 인 세대로서, 의료비 공제액이 12 만 엔인 세대의 경우, 총소득은 470 만 엔으로 소득 기준액인 396 만 엔을 초과합니다.

↓

공제액은 요건 A: (부)10 만 엔 + 요건 A: (모)10 만 엔 + 요건 C: 35 만 엔 + 요건 D: 35 만 엔 + 요건 F: 12 만 엔의 총 102 만 엔이 됩니다. 이 금액을 세대의 총소득으로부터 공제함으로써 (470 만 엔 - 102 만 엔 =) 368 만 엔이 이 세대의 소득 기준액이므로 취학원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표에 의한 소득금액의 확인

2025 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 | | | | |
|----------|------------------|--------------------|---------------|--|
| 지불을 받는 자 | 주소 또는 거소 | 요코하마시 ○○구 ○○ 1-2-3 | 성명 | 수입이 급여뿐인 경우는 이 금액에서 최대 10 만 엔을 공제한 것을 가지고 심사합니다. ※ 근무처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나 연말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이 금액이 아니라 시정촌에서 결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 종별 | 지불 금액 |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 | 소득공제 금액의 총 금액 | |
| 급여 | 아래 중 3,372,235 엔 | 2,280,400 엔 | 1,140,298 엔 | 53,000 엔 |

● 2026 년분 소득에 의한 심사

가계 상황 급변 등의 이유로 2026 년 소득을 가지고 취학원조 심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2027 년 1 월부터 2 월 24 일까지 2026 년분 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 부분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된 경우에는 연도 당초부터 세대에 변경이 없을 경우 2026 년 4 월로 소급하여 취학원조비를 지급합니다.

5 소득 등의 확인에 대한 동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소득 등의 확인에 동의하시는 분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서류 첨부 불필요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년 1 월 1 일 현재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표와 동일한 표기의 성명으로 세금 신고를 하였거나 주민표 정보로부터 요코하마시에서 보유한 세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 요코하마시에서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다(또는 수급할 예정이다) |
|----------------|---|

왼쪽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은 '6-2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소득 등의 확인’이란?

전년도 기준으로 18 세 이상(2007 년 4 월 1 일까지 출생)의 세대원에 대하여 각각 본인의 동의에 기초하여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상황 또는 과세증명서의 내용을 교육위원회가 확인합니다. 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는 경우의 신청서 기입 방법》

신청자(보호자)분께서 신청서 성명란에 기명, 날인해 주십시오.

세대원인 분은 성명란 우측에 있는 동의란에 날인 또는 서명해 주십시오. 도장이 없을 경우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6-1 제출서류에 대하여

| 신청 이유(1 페이지 참조) | 제 출 서 류 |
|----------------------------------|--|
| ①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 | 신청서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② 2025년 4월 이후에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분 | 신청서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③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계신 분 | 원칙적으로 신청서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2를 읽으신 후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해당 아동의 아동부양수당 수급자를 신청자로 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 ④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원칙적으로 신청서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2를 읽으신 후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 소득 등의 확인에 동의하신 분이더라도 세금 정보로부터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추후에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이유④로 신청하시는 분 중 **올해 들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세대 구성이 변화한 분**은 사정을 여쭙거나 별도의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이유④로 신청하시는 분 중 2026년의 소득을 가지고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동의에 의한 소득 등의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6-2 첨부서류에 대하여'를 읽으신 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6-2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③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계신 분

| 해당자 | 필요한 서류 |
|--|----------------------------------|
| 소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분 또는 해당 아동의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가 신청자가 아닌 경우 | · 아동부양수당 증서 사본(유효기한 내인 것, 원본 불가) |

◆신청 이유④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해당자 | 필요한 서류(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
| 소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분 또는 5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당초 (4월 신청) 다음 서류 중 하나 · 2025년분 원천징수표(연말조정된 것) · 2025년분 확정신고서 부분 1, 2 표(e-Tax는 신고내용확인표) (세무서 등에 수리된 것의 부분) |
| | 추가 (7월 신청 후) 다음 서류 중 하나(서류는 6월 이후에 발급됩니다.) · 2026년도 과세(비과세)증명서 (생략이 없는 것) · 2026년도 급여소득 등에 관한 시민세·현민세·삼림환경세 특별징수세액 결정·변경 통지서 · 2026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환경세 납세통지서 겸 결정통지서 |
| 2026년분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는 분 | 2026년분 원천징수표(연말정산된 것) 또는 세무서 등에 수리 기록된 확정신고서 부분 1, 2 표(e-Tax는 신고내용확인표) |

(주) 원천징수표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나 대상이 되는 해에 취직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가족 부양에 포함되지 않는 전년도 기준 18세 이상(2007년 4월 1일까지 출생)의 모든 분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 첨부된 서류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료의 추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7 결과 안내와 지급 예정 시기

심사결과(인정·불인정 등)는 학교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초 신청을 하신 분께는 7월 하순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부족한 서류가 있는 분 및 인정이 되지 않은 분께도 그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취학원조비는 학교를 통해 지급하므로 지급 기일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안내합니다.

| 지급 항목 | 입학준비비 | 학용품비 등 | 숙박을 수반하는 교외활동비 | 수학여행비 | 클럽활동비 | | 졸업앨범비 등 | 학교급식비 |
|----------------------------|------------------------|-----------------|-------------------------------|-------|-------------|-----------------|--------------------|-------|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
| 제 1기(4~7월분) 7월 하순경 지급 | ○(일괄) (초 1·중 1에 한함) | ○ | 행사 실시 후에 지급 (실시하고나서 수개월 후) | | - | ○ | - | 전액 총당 |
| 제 2기(8~11월분) 11월 하순경 지급 | ○ (초 6에 한함) | ○ | | | - | ○ | - | |
| 제 3기(12~3월분) 3월 중순경 지급 | - | ○ (끝수 조정 있음) | | | ○ (연 금액) | ○ (끝수 조정 있음) | ○ (초 6·중 3에 한함) | |

- * 각 항목의 지급 예정 시기는 표와 같습니다. 단, 약간 시기가 전후될 수 있습니다.
- * 서류 제출 시기에 따라 2기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초등학교 6 학년 대상의 중학교 입학준비비 구입권(표준복 등을 구입할 때 사용)은 2027 년 1 월경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 * 중학교 '학교급식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 중학교 급식비에 대하여'를 확인하십시오.

8 중학교 급식비에 대하여

8-1 취학원조를 신청 중일 때의 중학교 급식비

- ◆ 작년도 말(2025년도 말)까지 취학원조의 대상이었던 분
심사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도 학교에 신청함으로써 중학교 급식비를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 ◆ 금년도(2026년도)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 및 작년도 말(2025년도 말) 시점에 취학원조의 대상이 아니었던 분은
심사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불을 완료한 중학교 급식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8-2 심사 후의 중학교 급식비

【인정을 받은 분】 지불 불필요

이미 지불한 중학교 급식비의 반환 시기(학용품비 지급 시기와 중학교 급식비의 반환 시기는 다릅니다)

| 심사 결과 안내서 발송 | 지불 안내서 발송 | 반환 금액 | 입금 예정월 |
|--------------|-----------|--------|--------|
| 7월 하순 | 9월 중순 | 지불 완료액 | 9월 하순 |
| 9월 중순~10월 중순 | 12월 중순 | 지불 완료액 | 12월 하순 |
| 11월 중순~3월 중순 | 4월 중순 | 지불 완료액 | 5월 초순 |

【인정을 받지 못한 분】 아래 표와 같이 한꺼번에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우유 포함 및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 심사 결과 안내서 발송 | 지불 안내서 발송 | 지불 금액(내역) | 계좌입금일 |
|--------------|-----------|----------------------|---------|
| 7월 하순 | 8월 중순 | 4~7월의 급식 실시 일수×330엔 | 8월 31일 |
| 9월 중순까지 | 10월 중순 | 4~9월의 급식 실시 일수×330엔 | 10월 29일 |
| 10월 중순까지 | 11월 중순 | 4~10월의 급식 실시 일수×330엔 | 11월 30일 |

【10월 시점에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 아래 표와 같이 한꺼번에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 | | |
|---|--------|----------------------|---------|
| - | 11월 중순 | 4~10월의 급식 실시 일수×330엔 | 11월 30일 |
|---|--------|----------------------|---------|

9 기타 사항 및 유의사항

- *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과 결과 통지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하여 취급합니다.
- * 사실이 아닌 이유에 기초한 신청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지급된 취학원조비를 본래의 취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고 취학원조비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신청서 기입예 및 기입 시 주의할 점

- * 1 신청서 상부가 수령을 희망하는 보호자분의 신청란입니다. 신청란은 학교장에 대한 사무 위임 및 교육위원회의 소득 등의 확인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므로 꼼꼼히 읽으신 후 기입해 주십시오.
- * 2 우측 상단에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아동 한 명당 신청서 한 장이 필요합니다.
- * 3 취학원조제도를 신청할 때는 아동 및 신청자 이외에 세대의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대 상황란에 기재할 세대원

- 동거 중인 분(주민표의 세대가 다른 경우도 포함)
- 단신 부임 등으로 동거는 하지 않으나 동일 생계인 분 (친권자인 분은 별도 생계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
- 원격지 부양 중인 친족(과세증명서 등으로 부양관계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생활보호에 준하는 제도이므로
동일 거주인 분과 동일 생계인 분은
동일 세대로서 심사합니다.

- * 4 수령 방법은 제 17 호 양식의 1(수령신청서)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계좌입금을 희망하는 분은 그 아래의 계좌입금의뢰서로 입금할 계좌를 신고해 주십시오. 신청자명과 계좌명의인은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기입예)

横浜市教育委員会教育長
私は、次の理由により就学援助を申請します。
なお、援助費の請求・受領・戻入・充当・復委任に関することは校長に委任します。
また、教育委員会による私の所得等の確認について同意します。(※)
令和 8 年 4 月 10 日 申請者氏名欄に必ず押印して下さい。

| | | | | | | |
|------|------------------|----------------|----------|--------------------|-------------------|---------------------|
| フリガナ | ヨコハマ ダロ | | 児童生徒との続柄 | ① 児童生徒 | フリガナ | ヨコハマ ジロ |
| 氏名 | ヨコハマ ダロ | | 横濱 | ① 児童生徒 | 氏名 | ヨコハマ ジロ |
| 現住所 | 横浜市 ナカ 区 6-50-10 | | 生年月日 | 西暦 1979 年 10 月 2 日 | 生年月日 | 西暦 2013 年 12 月 12 日 |
| 電話番号 | 〇〇〇(×××)△△△△ | 障害等級・障害年金受給状況等 | 職業 | 회사원 | 在籍・障害等級・障害年金受給状況等 | 개별급 |

※所得等の確認は、ご本人の同意に基づいて行います。申請者の方が確認に同意されない場合は、申請文にある「また、教育・・・同意します」の部分をご二重線で削除してください。

世帯状況：上記「①児童生徒」「②申請者(保護者)」以外の世帯員全員(記入日現在)を記入してください。(祖父母、同居人等の同一住所の方についても忘れずに記入してください。)

| 世帯員氏名 (上記児童生徒・申請者以外) | 児童生徒との続柄 | 所得等の確認について (18歳以上の方のみ) | 生年月日 | 個別級在籍・障害等級 障害年金受給状況等 | 在学学校名 |
|-------------------------|----------|---|------------------|-------------------------|--------------|
| ③ 요코하마 하나코 | 모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⑦ (ヨコハマ 하나코) | 西暦 1979. 6 . 10 | ⑧ | |
| ④ 요코하마 이치로 | 형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⑨ () | 西暦 2011. 4 . 20 | B2 | 미나토초 중학교 3학년 |
| ⑤ 간나이 가즈오 | 조부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⑩ () | 西暦 1951. 11 . 16 | 장애 3급 | 없음 |
| ⑥ |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⑪ () | 西暦 . . | | |
| ⑦ |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⑫ () | 西暦 . . | | |
| ⑧ |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⑬ () | 西暦 . . | | |
| ⑨ |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⑭ () | 西暦 . . | | |
| ⑩ |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⑮ () | 西暦 . . | | |
| ⑪ | | 同意する場合は本人の印または署名 (フルネーム) ⑯ () | 西暦 . . | | |

⑫ 小学校1年生・中学校1年生で下記に該当する方のみ☑をしてください。

他都市において、受給・申請を含む入学準備費に関する手続きを、申請日現在、申請児童生徒本人について行っている
※兄弟姉妹の受給・申請ではありません。

⑬ 全員ご記入・ご回答ください (該当する項目に☑をしてください)

【該当理由】

①現在、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理由1】

②令和7年4月以降、生活保護が停止または廃止になった(世帯による廃止を除く)【理由2】

③児童扶養手当を受給または申請中である【理由3】
※児童手当・特別児童扶養手当のことはありません

④その他経済的に困っている【理由4】

⑭

QRコードを読み取り、各世帯員の西暦及び記入例を参照して、記載してください。

① 학교 제출
연월일제 기입해
주십시오.

② 신청자는 반드시 기명필
내인, 날인해 주십시오. 도장이
없을 경우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아동의 인정에서 본 관계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부, 모, 형(오빠),
누나(언니), 동생, 조부, 조모, 조부 등

④ 입학준비를 타 도시에서 이미 수급하였거나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⑤ 아동인 경우는
주십시오.
☑ 표시해

⑥ 신체 상황, 란이
개별지원금에 재학 중인 경우는
또한 장애연급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장애연급 수급, 이라 기입해 주십시오.

⑦ 신청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 1~4 중 하나에
표시해 주십시오.

11 자주 있는 질문

Q1 형제가 있는데 신청은 각각 해야 하나요?

A1 네, 각각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한 명당 한 장 필요하므로 각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Q2 신청서에는 누구를 기입하나요?

A2 동일 거주 또는 동일 생계인 분은 동일 세대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기입해 주십시오. (생활보호에 준하는 제도이므로)

- 동거 중인 분(주민표의 세대가 다른 경우도 포함)
- 단신 부임 등으로 동거는 하지 않으나 동일 생계인 분 (친권자인 분은 별도 생계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
- 원격지 부양 중인 친족(과세증명서 등으로 부양 관계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Q3 언제의 소득으로 심사하나요?

A3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대의 합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단, 가계 상황 급변 등으로 2026년의 소득을 가지고 취학원조 심사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7년 1월부터 2월 24일까지 2026년분의 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 부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전년도 총소득이 기준액 이하인지 불분명한데 신청 가능한가요?

A4 전년도 총소득은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 또는 확정신고서 제 1 표의 소득금액의 '합계란' 등에 기재된 금액이므로 참고하십시오. 또한 세대 전체의 소득이 기준 내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신청해 주십시오.

Q5 첫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5 연도 당초 신청(학교에 따라 마감 기한이 다릅니다) 시에 제출한 경우는 7월 하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수학여행이나 숙박을 수반하는 교외활동 등의 실비에 의한 신청은 행사 실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지급합니다.

Q6 취학원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가정에게는 알리지 않나요?

A6 취학원조제도는 다른 가정에 알리지 않도록 사무 처리하여 다른 아동이 아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합니다.

【견본】 2026 년도 취학원조신청서

신청번호

별지의 기입예를 참고하여 굵은 선 안을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선택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
|--|---------|------|------|---|---------------------------|---|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저는 다음의 이유로 취학원조를 신청합니다. 또한 원조비의 청구, 수령, 여입, 중당, 복위입에 관한 것은 교장에게 위임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내 소득 등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란에 반드시 날인해 주십시오. | | | | | 학교명 초등학교 중학교 년 반 | |
| 후리가나 | 아동과의 관계 | | ① 아동 | | 후리가나 | |
| 성명 | Ⓜ | | | | 성명 | |
| 현주소 요코하마시 구 | |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서양력 | | | 년 | 월 |
| 장애등급·장애연금 수급 상황 등 | | 생년월일 | 서양력 | 년 | 월 | 일 |
| 장애등급·장애연금 수급 상황 등 | | 생년월일 | 서양력 | 년 | 월 | 일 |

※소득 등의 확인은 본인의 동의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 신청자가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문에 기재된 '또한 교육...동의합니다' 부분에 두 줄을 그어 삭제해 주십시오.

**세대 상황: 상기의 '①아동', '②신청자(보호자)' 이외의 세대원 전원(기입일 기준)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부모, 동거인 등 동일 주소를 가진 분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 No. | 세대원 성명 (상기 아동·신청자 이외) | 아동과의 관계 | 소득 등의 확인에 대하여 (18 세 이상인 분에 한함) | 생년월일 | 개별금 재적· 장애연금·장애연금 수급 상황 등 | 재학 학교명 |
|-----|--------------------------|------------|--|----------|------------------------------|--------|
| ③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④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⑤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⑥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⑦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⑧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⑨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⑩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⑪ | | |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 (본 내임) Ⓜ () | 서양력 · | | |

☐ 초등학교 1 학년·중학교 1 학년인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만 표시해 주십시오.

☐ 타 도시에서 수급, 신청을 포함해 입학준비비에 관한 수속을 신청일 시점에 신청 아동 본인에 대해 실시하였다
 ※형제 자매의 수급, 신청이 아닙니다.

☐ **전원 기입 및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 이유】

- ①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이유 1】
- ② 2025년 4월 이후에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세대에 따른 폐지는 제외) 【이유 2】
- ③ 아동부양수당을 수급 또는 신청 중이다 【이유 3】
*아동수당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아닙니다
- ④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 4】



QR 코드를 스캔해서 각 세대원의 서력 및 기입 예를 참조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학교 교위 기입란 학교에서 기입해 주십시오. (보호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이 신청서에 기입하신 내용은 취학원조 사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하여 취급합니다.
 ☐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여 처리합니다.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